◎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-272호

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연구 「디지털 바이오 스마트 임상지원 플랫폼 구축」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
2025년 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연구「디지털 바이오 스마트 임 상지원 플랫폼 구축」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 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4월 10일

보건복지부장관 조 규 홍

< 2025년도 보건의료R&D 정책방향 >

"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.0 시대 구현"

① 보건의료기술 수준 향상, ② 지역 의료형평성 제고 ③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 (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, '23.4)

2025년도 전략방향

보건의료 R&D 임무 지향성 강화, 국가전략기술 투자 위한 부처간 협업연계 및 글로벌 연구생태계 고도화

4^{대 전략별} 중점 추진전략

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	① 필수의료 정책지원 및 주요 질환 진단·치료를 위한 혁신 의료기술 확보 ② 정신건강 증진, 건강약자 지원 등 국민 중심 연구 강화 ③ 미래 감염병 대응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
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	④ 첨단바이오 기술 기반 첨단재생의료 실용화 촉진 ⑤ 신약·의료기기 등 차세대 유망기술 경쟁력 강화
혁신을 촉진하는 R&D 생태계	⑥ 지역 혁신·연구 인프라 강화 ⑦ 글로벌 협력 확대 및 Top-tier 인재양성 강화
데이터·AI가 선도하는 미래의료	⑧ AI 기반 의료서비스 혁신플랫폼 확보 및 혁신 가속화⑨ 보건의료 데이터 사용자 중심 활용체계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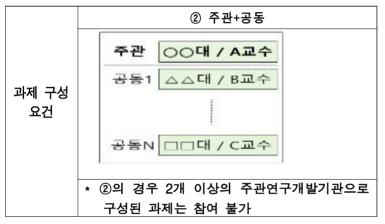
I. 공고 개요

※ 상세 지원내용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(RFP)를 확인하시고 선정예정 과제수 및 연구 개발비는 정부예산사정,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세부 사업명	공고단위 (RFP명)	지원규모	지원기간	과제구성 요건 (아래 참고)	선정예정 과제수
스마트 임상시험	디지털 바이오 스마트	70.4억원 이내/년	3년 이내	2	1
신기술 개발연구	임상지원 플랫폼 구축	(1차년도 30.2억원)	*1차년도 6개월	주관+공동	

※ 과제 구성 요건은 해당 사업의 RFP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

② (주관+공동)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



- ※ 주관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공동·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음(동일 연구개발기관은 법인번호 기준으로 구분함(동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중복참여 불가)
- ※ 지원분야·세부분야별 최종 선정과제 수와 지원기간 등은 신청 과제의 우수성, 접수 경쟁률, 연간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과 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

Ⅱ. 신청요건

□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-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
-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
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출연 연구원
- ○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○「상법」제169조에 따른 회사
- ○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「민법」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-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 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·단체(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- ※ 상세 지원대상은 과제제안요구서(RFP)별로 확인 필요
- ※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
- ※ 주관·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(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)
- ※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(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)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
□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(RFP)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
 - ※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/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
- ·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

□ 신청 제한

-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(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1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

<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(3책5공) 연구책임자/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>

구분	연구책임자	책임자 외 연구자
주관연구개발과제(기관)	연구책임자	참여연구자
공동연구개발과제(기관)	참여연구자	섬어연구자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64조(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)2항에 따른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
 - ·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 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.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
- 최종 과제제안요구서(RFP)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'RFP 기획 보안서약서'를 작성하고 해당 RFP 공모 시 주관· 공동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 신청 제한

Ⅲ. 신청 방법

□ 공고 및 접수처

- ※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202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IRIS*(https://www.iris.go.kr)를 통해 과제신청,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.
 - * 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: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
- (공고)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 사업공고 ②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 사업공고
- (접수) <u>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</u>

□ 신청절차

○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https://www.iris.go.kr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 연구기관 확인·승인

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		접수			
연구(책임)자가 NRI 가입,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·갱신 (학력, 경력 등)	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 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	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		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·승인 ※ 주관 단위 승인	연구과제 신청완료
① 연구자	② 연구개발기관	① 연구책임자		② 주관연구개발기관장	

- 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- ▶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* 세부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 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- 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
 - 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 - 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 - ※ ① 및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, ③: 연구책임자만 필수
- ② (연구개발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 - 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**반드시 신청기간 시작**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- 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□ 공고 및 접수기한

※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,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 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임

공고대상	전산입력 시작일	연 구 책 임 자 과제신청기간 (전산입력)*	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·승인 기간**
2025년도			
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연구	0005 4 10/51	0005 5 40 (\$ 1)	0005 F 10 (=1)
「디지털 바이오 스마트 임상지원	2025. 4. 10(화)	2025. 5. 13.(화)	2025. 5. 13.(화)
플랫폼 구축」	10:00	14:00	14:00
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			

- * 기간 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완료를 원칙으로 함
- ** 연구자가 제출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기관담당자 승인을 완료해야 함(단, 연구책임자 신청기간에도 미리 검토·승인 가능)
 - ※ 전산입력(접수)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
 - ※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승인을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, 기한 내 기관 미승인시에 접수대상에서 제외됨
 - ※ 과제신청 마감시간 임박 시(마감 2일전부터) 전산접속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, 마감시간으로부터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고 신청 요망

Ⅳ. 관련 법령 및 규정

- □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등의 법령과 하위규정을 적용
 - ※ 상세내용은 www.htdream.kr → 자료실→ 법규/서식에서 확인 가능
 - ※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·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 될 수 있음

V. 기 타

□ 연구개발비 산정기준

-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「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(2024.2.29. 개정)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
-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

연구개발기관 유형	연구개 발	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			
	정부지원연구개발비	기관부담연구개발비	현금 부담 비율		
비영리기관	100% 이하	_	_		
중소기업	75% 이하	25% 이상	10% 이상		
중견기업	70% 이하	30% 이상	13% 이상		
공기업·대기업	50% 이하	50% 이상	15% 이상		
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(비영리·영리기관 공통 적용)	가.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. 연구시설·장비비 다. 기술도입비·연구재료비				
기관부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비율 (해당 연구개발기관)정부지원연구개발비+기관부담연구개발비					

※ 과제제안요구서(RFP)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, 해당 RFP 기준 적용

□ 연구시설・장비 도입시 유의사항

- 연구시설.장비(3천만원 이상)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
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'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'를 작성·첨부하여야 함
-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.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에서 심의,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.장비심의위원회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)에서 심의

□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

○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 윤리위원회(IRB)의 심의를 받아야 함

□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

○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'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'의 담당 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・기탁하여야 함

□ 기술료 제도 안내

-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
 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개발 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
 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
※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안내서 참조

VI. 문의처

□ 사업공고 열람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
-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

□ 사업별 담당자 안내

- 과제 접수(시스템 입력) 관련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: 1877-2041
- ※ IRIS 콜센터 운영시간 : 09:00 ∼ 18:00
- 과제 담당자 안내
- 연구중심병원R&D육성팀 김정숙 팀장(043-713-8720)
- 연구중심병원인증평가팀 최효정 책임연구원(043-713-8751)